

의안 번호	15
----------	----

2026. 7.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5
----------	----

제출년월일 : 2026. 7. 9.

제 출 자 : 창 원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치매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과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임.
- 나. 민간의 축적된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관리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민간 위탁하고자 함.
- 다.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관리 및 운영
- 나. 민간위탁의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
 - 필요성
 - 민간의 유연성으로 다양화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요구에 대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 가능

- 전문적인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치매 노인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체활동 지원 가능
- 민간위탁 시 법인의 전입금,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모집이 가능하여 운영 비용 절감 및 서비스 질 향상 가능

다. 위탁사무 :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치매 노인의 기능 유지 및 악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치매 노인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
- 치매 노인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그 밖에 사장이 치매 노인의 심신 기능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탁재산(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 등)의 유지 및 관리

라. 시설현황

- 시설명 :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 위치 : 마산회원구 석전남8길 33
- 규모 : 지상2층, 연면적 357.72㎡
- 층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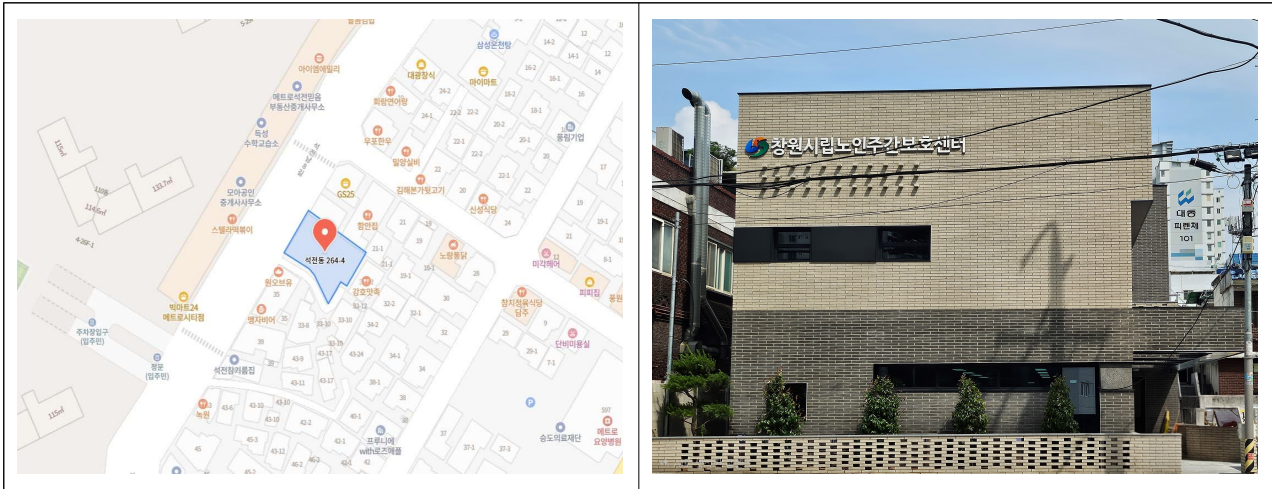
구 분	면적(㎡)	용 도
계	357.72	
1층	181.43	프로그램실, 생활실, 화장실, 세탁실, 물리치료실 등
2층	176.29	프로그램실, 생활실, 화장실, 샤워실, 조리실 등

- 이용정원/종사자 : 24명 / 11명(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영양보호사 등)

○ 이용대상

- 1)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 2)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
- 3)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마.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 개시일로부터 5년

바. 위 탁 금 : 미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수입으로 운영)

사. 선정방법 : 공개모집(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탁법인 선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심 의 일 : 2026. 7. 2.(목)

○ 심의결과 : 원안가결(적정)

붙임 관련법규 1부. 끝.

□ **노인복지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 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 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등

제5조(민간위탁 사무의 예시)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노숙인 등의 복지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2. 교육, 도서관, 체육, 공원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 예술, 관광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4. 도시재생, 일자리창출, 교통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환경기초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6. 시립병원, 보건, 건강증진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7. 각종 회관, 물류센터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8. 도시경관, 환경, 위생 시설 및 관련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